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2000년 9월 30일 제정)
(2004년 5월 10일 1차개정)
(2005년 3월 17일 2차개정)
(2005년 8월 29일 3차개정)
(2007년 4월 14일 4차개정)
(2008년 12월 31일 5차개정)
(2010년 7월 16일 6차개정)
(2011년 4월 9일 7차개정)
(2014년 7월 30일 8차개정)
(2016년 11월 5일 9차개정)
(2017년 4월 22일 10차개정)
(2019년 12월 18일 11차개정)
(2025년 4월 19일 12차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도시설계(Urban Design)”의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도시설계학회지의 구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는 학술지로서, 도시설계에 관한 학술연구논문과 설계연구논문으로 구성된다.

제3조 (발간)

- ① “도시설계”는 연6회(격월간) 발간한다. 제1호는 2월 28일, 제2호는 4월 30일, 제3호는 6월 30일, 제4호는 8월 31일, 제5호는 10월 31일, 제6호는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가지정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근무일을 발행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

제4조 (논문의 구성)

- ① 학술연구논문은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의 질과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 관련 분야 (도시설계와 경관계획, 단지계획, 도시개발, 도시계획 일반, 도시역사, 정책제도, 조경, 환경/생태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방법과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이론화 또는 대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독창적인 학술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국도시설계학회의 논문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설계연구논문은 국내외 우수한 도시설계 작품을 학술논문의 양식으로 구성하고, 설계 주제와 문제 제기, 설계 개념과 설계 과정 및 대안의 도출에 있어서 독창적인 도시설계언어의 도입 또는 창의적인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며, 한국도시설계학회의 논문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투고 자격 및 방법)

- ① “도시설계”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그리고 기타저자의 경우는 준회원이상이어야 하며, 게재년도까지의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투고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관리하도록 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oo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oo대학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oo대학 /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oo대학 / 박사후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 oo학교 /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oo학교 /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③ 투고 논문은 그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도시설계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논문투고는 홈페이지(제출처: <http://www.udik.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투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매체(webhard, CD-ROM, Zip Disk 등)를 사용하여 인터넷, FTP서버,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한 회의 학회지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1편 이상 실을 수 없다. 단,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 가능하며, 동일 저자가 제출한 부제만을 달리한 동일제목 논문의 게재는 불가하다.
- 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6조 (투고논문의 접수, 마감, 게재 및 반환)

- ①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 ② 학회지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은 다음 표와 같다. 제출된 원고의 발간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확인 및 편집수정요구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표 1〉 원고접수 마감일

구분	원고접수	게재확정후 원고제출	편집수정완료 인쇄원고제출	학회지 발간일
1호	전년12월 31일	1월 31일	2월 15일	2월 28일
2호	2월 28일	3월 31일	4월 15일	4월 30일
3호	4월 30일	5월 31일	6월 15일	6월 30일
4호	6월 30일	7월 31일	8월 15일	8월 31일
5호	8월 31일	9월 30일	10월 15일	10월 31일
6호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15일	12월 31일

- ③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도시설계학회에 속한다.

제7조 (심사로 및 논문게재료)

- ① 투고자는 논문접수시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 확정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로 및 게재료, 초과게재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학회지 투고안내를 통해 알린다.

제3장 심사

제8조 (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도시설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다음 11개의 분과의 상임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하나 이상의 분과에 중복 소속될 수 있다. 상임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
 - 도시설계
 - 단지계획
 - 계량분석
 - 도시계획 일반
 - 조경설계
 - 환경/생태 등
 - 도시개발
 - 경관계획
 - 도시역사
 - 정책제도
 - 컴퓨터 응용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투고논문의 저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를 맡을 수 없다.
- ③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9조 (논문심사)

-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3인의 익명 심사위원이 수행한다. 각 심사위원은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로 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논문의 게재여부는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중 “차선”의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표 2〉 논문심사의 평가결과 및 조치

유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 C	결과 및 조치
1	현상태 게재	현상태 게재	현상태 게재	현상태 게재
2	현상태 게재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3	현상태 게재	현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4	현상태 게재	현상태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5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6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7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8	현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위원 B, C 재심사
9	현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위원 B 재심사
10	현상태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1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12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13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위원 B, C 재심사
14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15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위원 B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전원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위원 A, B 재심사
19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0조 (논문심사의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 ① 학술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주제 적절성
 -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 논문 전개 논리성
 - 학술적 기여도
 - 표, 그림, 지도 형식의 적합성
 - 분량의 적절성
- ② 설계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설계 주제의 적절성
 - 설계 문제의 정의 및 분석
 - 설계 개념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설계 과정/방법론의 논리성
 - 설계 결과물의 학술적 또는 실무적 기여도
 -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질적수준
 - 표, 그림, 지도 형식의 적절성
- ③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 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 시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 및 기타 심사자료를 기록으로 보관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한과 수정기한)

- ①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되어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투고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심사위원 중 한명이 '게재 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치는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인결과 통보 후 90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제목과 초록 및 본문문장(영문 및 국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수정권고 후 90일 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성실히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⑥ 논문의 접수일, 1차 심사완료일, 2차 심사완료일 등을 게재논문 말미에 표시한다.

제12조 (심사료)

- 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는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심사료는 심사 완료와 더불어 지급되며, 심사완료시 전에 심사지연 등의 문제로 심사위원이 교체된 경우, 중도 교체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③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은 논문 및 작품의 심사와 학회지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관련 분야(도시설계와 경관계획, 계량분석, 단지계획, 도시개발, 도시계획 일반, 도시역사, 정책제도, 조경설계, 컴퓨터 응용, 환경/생태 등)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풍부한 실무 설계가 및 기술사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정회원도 선임할 수 있다.
- ⑤ 영어논문의 심사 및 편집자문을 위하여 위의 정원과 별도로 7인 이내의 저명한 외국인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외국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 논문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등의 권한을 갖는다.
- ②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